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년 12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12.14 평창군수(기획실장)
- 나. 회 부 일 자 : 2001. 12.20
- 다. 상 정 일 자 : 2001. 12.21 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특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실장 권순철)

가. 제안이유

-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기준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입사생 선발
의 객관성확보와 행정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선발 및 심의기준 변경(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는 2001년 10월 13일 제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심사시 조례내용중 일부가 입사생 선발자
선정시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 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유보되었던 조례임.

-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가산점을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는 성적의 20%, 평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성적의 10%로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음.
- 기타 입법의 절차·형식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